

# 코로나19와 전남지역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

이 보고는 올해 초부터 확산, 장기화 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로 인하여 전남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 실태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 시행,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함

※ 이 조사는 긴급성을 요하기에 간이(문항의 수와 내용, 표집추출 등)로 진행, 노동환경변화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바, 이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여부를 판단·시행하시기 바람

- 조사대상: 전남지역 노동자
- 조사기간: 2020.5.8.~5.21.(14일간)
- 조사기관: 전남노동권익센터



1

## 설문조사 결과

### □ 조사 개요

- 조사명: 코로나19와 전남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실태조사
- 조사목적: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변화된 노동환경 파악
- 조사방법과 대상: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
- 설문조사 표본 (381명)
  - 설문 내용: 노동환경 일반사항,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여부와 재난 특별지원금에 대한 의견 등 총 13문항
  - 온라인은 500명(중 회수 129명으로 회수율 25.8%) 대면조사(252명)
  - 대면조사는 목포, 순천, 나주, 광양, 여수, 보성, 무안, 영암에서 시행
- 조사기간: 2020년 5월 8일부터 5.21일까지(14일간)

### □ 주요 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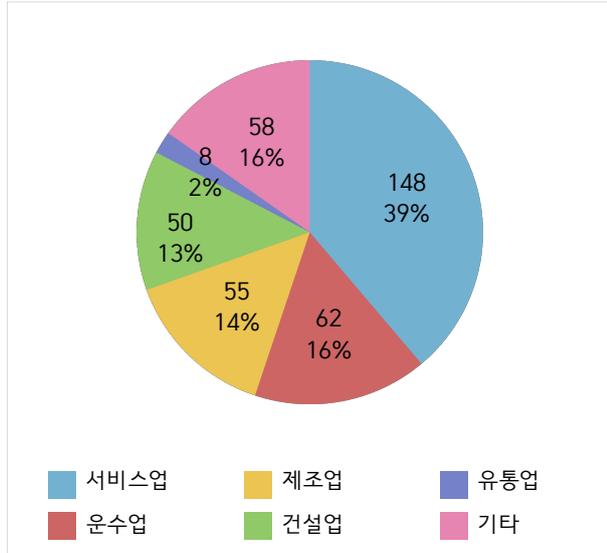
#### 1. 조사대상 업종

- 조사 대상은 대면 접촉 기회가 많아 코로나19에 노출위험이 높은 업종 순으로 서비스업(학원,보건,영업 등), 운수업(택시,버스), 제조업, 건설업, 유통업 등 5개 업종과 기타로 분류함.
  - 전체 응답자의 업종별 비율은 서비스업 39%, 운수업 16%, 제조업 14%, 건설업13%, 유통업 2%, 기타 16%로 나타남.
  -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구체적인 직업, 업종을 기재, 사무직(11명), 교육업(11명), 요양보호사(6명), 사회복지(5명), 보험설계사(4명), 보육교사(3명), 판매직(2명), 환경업, 프리랜서, 미화, 발골, 방역소독 각각 1명이며, 사무직과 발골 외에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가능.
  - 기타를 서비스 업종으로 묶을 경우 대상자의 과반을 차지함.

**코로나19, 노동환경변화조사결과**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서비스업	148	39	-
운수업	62	16	-
제조업	55	14	-
건설업	50	13	-
유통업	8	2	-
기 타	58	16	-
계	381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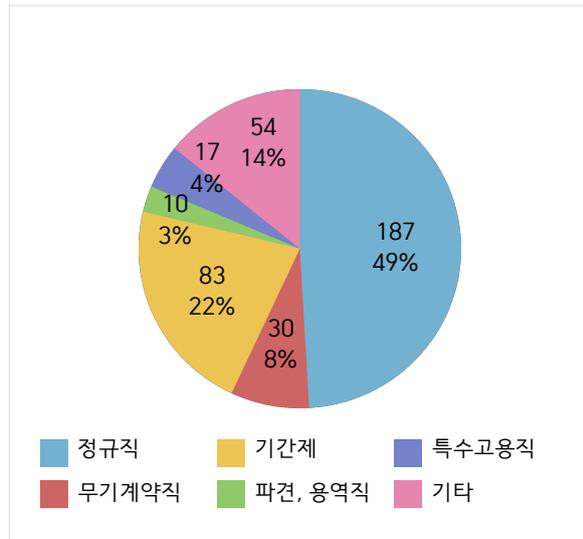
[도표1] 업종분류

**2. 근로계약 형태**

- 근로계약의 형태는 정규직이 전체 응답자의 49%, 기간제 22%, 무기 계약직 8%, 특수고용직 4%, 파견·용역직 3% 순으로 나타남.
- 기타를 선택한 14%는 프리랜서,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임시직, 시간강사, 수습 등 현재 고용상태를 표시, 중규(中規)직인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군이 43%를 차지함.

(단위 : 명/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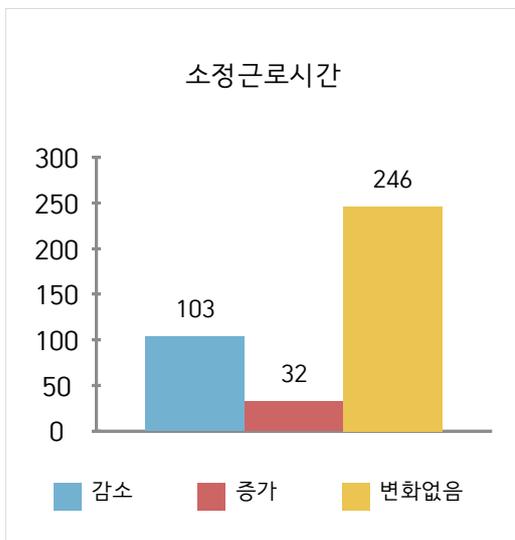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정규직	187	49	정규
무기계약직	30	8	중규
기간제	83	22	비정규
파견·용역직	10	3	"
특수고용직	17	4	"
기 타	54	14	"
계	381	100	-



[도표2] 근로계약형태

### 3. 근로시간의 변동 여부

-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%는 변화 없음으로 답하였고, 27%는 감소, 8%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시간외 근무시간은 대체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, 변화 없음 65%, 감소 27%, 증가 8%로 조사됨.
- 근로시간의 감소는 시간제, 아르바이트 등 근로시간 조정이 쉬운 비정규직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임.

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감 소	103	27	-
증 가	32	8	-
변화없음	246	65	-
계	381	100	-

[도표3-1] 소정근로시간

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감 소	103	27	-
증 가	33	8	-
변화없음	244	65	-
계	381	100	-

[도표3-2] 시간외 근무

### 4. 코로나19 사태발생 전후로 월평균 임금액 변동여부

- 코로나19 발생 전에 받았던 월평균 임금액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1%를,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19%, 100만 원 미만 14%,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2% 순으로 나타

**코로나19, 노동환경변화조사결과**

났으며,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과 350만 원 이상도 각각 8%를 차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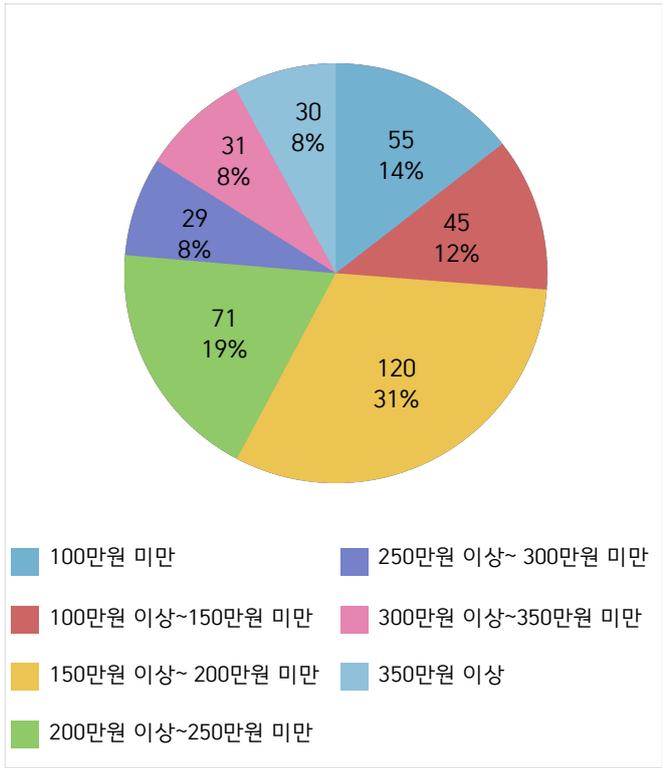
- 250만 원 미만이 전체응답자의 76%를 차지, 전남도 5인 미만사업 상용 월 평균급여 323만 원(3,235천원)과 70만 원 이상 적으며,
-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2019년 월 임금총액(정액+초과급여+연간특별급여/12개월의 합)이 314만 원(3,138천원)보다 전체응답자의 급여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.

※ 정규직 3,612천원, 비정규직 1,643천원, 기간제 2,440천원, 파견·용역 2,027천원 일용 1,569천원(고용노동통계조사,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향 참조)

[http://laborstat.moel.go.kr/hmp/tblInfo/TblInfoList.do?menuId=0010001100101104&leftMenuId=0010001100101vwCdVal=MT\\_ZTITLE&upListVal=118\\_159](http://laborstat.moel.go.kr/hmp/tblInfo/TblInfoList.do?menuId=0010001100101104&leftMenuId=0010001100101vwCdVal=MT_ZTITLE&upListVal=118_159)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율	비 고
100만원 미만	55	14	-
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	45	12	-
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	120	31	-
2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	71	19	-
2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	29	8	-
300만 원 이상 350만원 미만	31	8	-
350만 원 이상	30	8	-
계	381	100	-



[도표4] 코로나19발생 전, 월평균 임금

-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변동에 관하여, 전체응답자의 54%가 10%감소~변화 없음이라 답하였고,
  - 30~50%감소는 27%, 10~30%감소 17%, 반면 증가되었다고 답한 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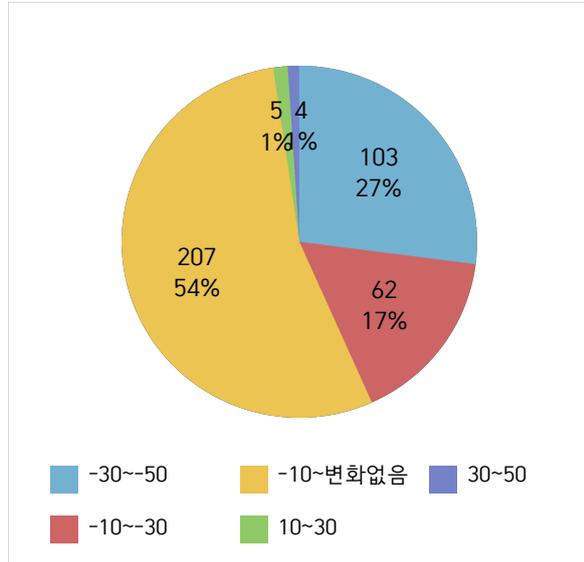
**코로나19, 노동환경변화조사결과**

답자는 2%로 10~30%와 30~50%증가가 각각 1%로 나타남.

- 코로나19 사태로 월평균 소득감소는 전체 응답자의 44%를 차지, 10% 내외의 감소를 감안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소득감소 상태임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-30% ~ -50%	103	27	-
-10% ~ -30%	62	17	-
-10% ~ 변화 없음	207	54	-
10% ~ 30%	5	1	-
30% ~ 50%	4	1	-
계	381	100	-



[도표5] 코로나19 발생 후, 임금변화

**5.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, 새로운 업무추가 및 직원감원여부**

-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 추가 여부에 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1%가 업무추가 없음으로 답하였고, 19%가 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그 령 다	74	81	-
그렇지 않다	307	19	-
계	381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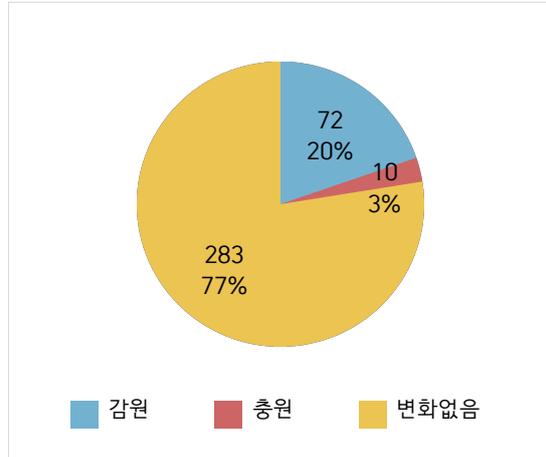
[도표6] 새로운 업무추가여부

**코로나19, 노동환경변화조사결과**

-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직원 감원 여부에 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77%가 변화 없음, 감원 20%, 총원 3%로 나타나, 감원은 인원조정이 쉬운 일용,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형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함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감 원	72	20	-
총 원	10	3	-
변화 없음	283	77	-
계	365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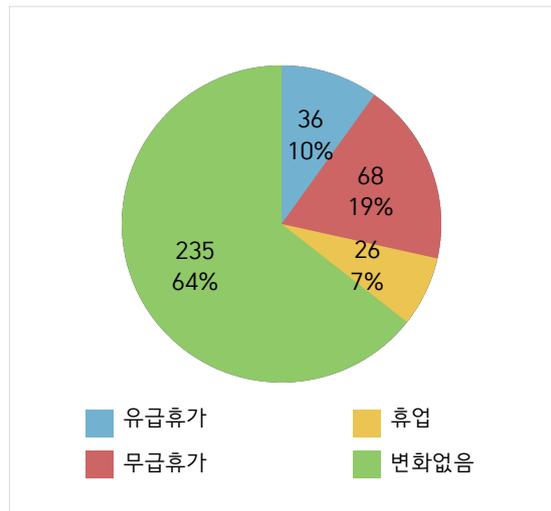
[도표 7] 회사 직원 감원 여부

**6.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, 휴가사용 여부 및 사유**

-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사용은 변화 없음이 전체 응답자의 64%, 무급휴가 19%, 유급휴가 10%, 회사의 휴업 7% 발생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유 급 휴 가	36	10	-
무 급 휴 가	68	19	-
휴 업	26	7	-
변화 없음	235	64	-
계	365	100	-



[도표 8] 휴가사용 여부

- 휴가사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29%이며, 휴가사용 이유로는 회사요구 55%, 개인사정 34%, 휴업(어린이 집 등)으로 인한 휴가상태 7%임.
- 정규직군에서는 휴가 사용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과 큰 변화 없음

**코로나19, 노동환경변화조사결과**

나,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일감감소에 따른 노동자의 수급조정 방안으로 유급휴가 → 무급휴가 → 휴업 등을 이용하고, 경영이 더 악화되면 해고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음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회사의 요구	57	55	-
개인적 사유	36	34	-
휴 원	1	1	-
병 가	1	1	-
기 타	9	9	-
계	104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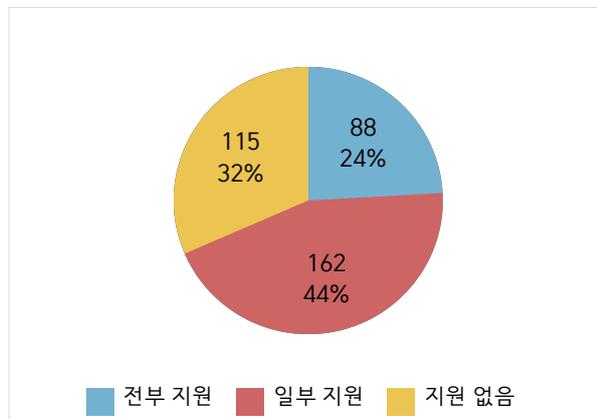
[도표 9] 휴가사용 사유

**7.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회사의 지원 여부**

-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지원(방역물품으로 마스크, 손소독제 등) 여부에 대해, 일부 지원 전체 응답자의 46%, 전부지원 23%로 사업장의 지원은 69%로 나타남.
- 한편, 지원 없음이라는 응답이 31%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, 이를 통해 감염증에 대한 예방 인식과 노력 부족, 긴장감 결여 등,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전 부 지원	90	23	-
일 부 지원	174	46	-
지 원 없음	117	31	-
계	381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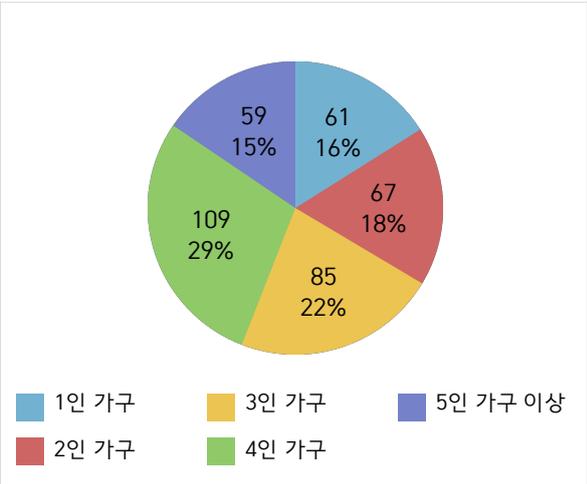
[도표10] 코로나19 예방도구 지원여부

8. 가구구성과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, 가구 소득 변동 여부

○ 일반사항으로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, 4인 가구가 전체 응답자의 29%를 차지하며, 3인 가구 22%, 2인 가구 18%, 1인 가구 16%로 나타남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1인 가구	61	16	-
2인 가구	67	18	-
3인 가구	85	22	-
4인 가구	109	29	-
5인 가구 이상	59	15	-
계	381	10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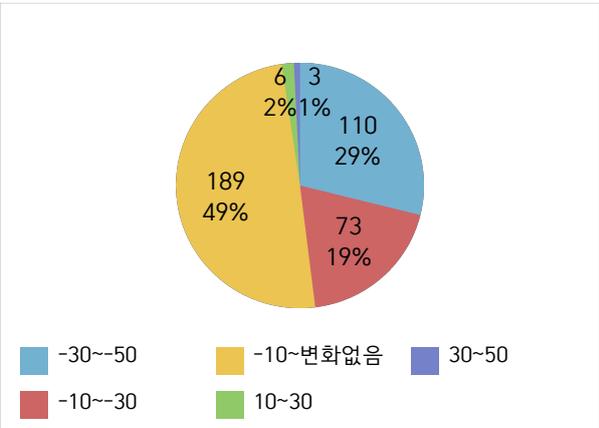


[도표11] 가구 구성

○ 코로나19사태 발생 후에 가구 소득의 변동 여부, 변동이 있었다면 월 평균가구 소득 몇 %의 증감이 있었는지 대해,  
 - 전체 응답자의 49%가 10%감소~변화 없음으로 답하였고,  
 -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%이며, 30~50%감소가 29%, 10~30%감소가 19%로 나타나, 코로나19로 가구 소득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수	비 율	비 고
-30% ~ -50%	110	29	-
-10% ~ -30%	73	19	-
-10% ~ 변화 없음	189	49	-
10% ~ 30%	6	2	-
30% ~ 50%	3	1	-
계	381	100	-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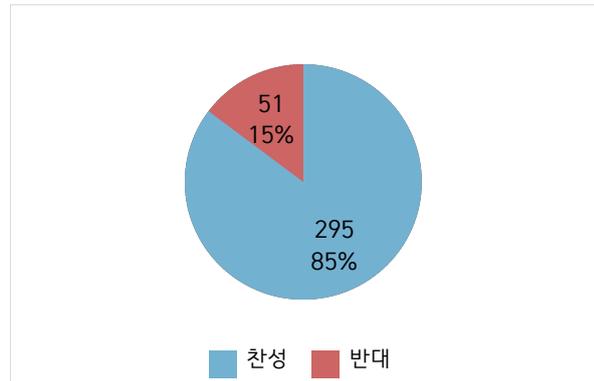
[도표12] 가구 소득의 변동

### 9. 특수고용·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특별지원 여부

-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와 확산 등의 여파로 실업증가 등 고용유지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·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게도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, 대구의 예에 따라 전남도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,
  - 전체 응답자의(381명 중 346명 응답) 85% 찬성, 15%가 반대함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찬 성	295	85	-
반 대	51	15	-
계	346	10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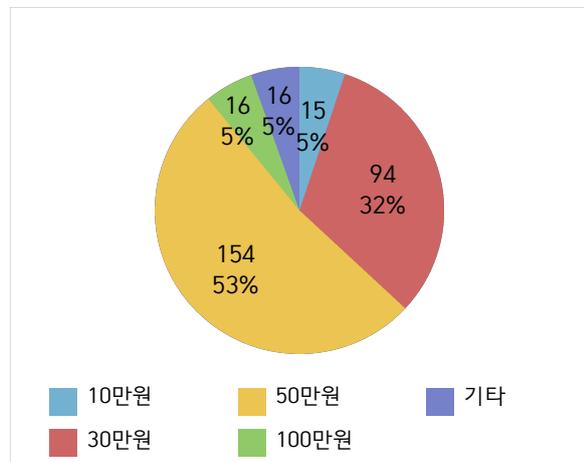


[도표13] 특수고용·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의 특별지원여부

- 특수고용·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의 특별지원에 찬성한 경우, 지원금의 적정액에 대하여,
  - 전체응답자의 53%가 50만 원을, 31%가 30만 원, 6%가 100만 원, 4%가 10만 원을 적정하고 봄.
  - 기타 6%(16건)의 내용은 20만원 1건, 40만원 1건, 70만원 1건, 70-100만원 1건, 150만원 3건, 급여50% 1건, 자녀수 비례1건, 평균금액 3건, 미기재 4건임.

(단위 : 명/%)

구 분	응답자 수	비 율	비 고
10만원	15	5	-
30만원	94	32	-
50만원	154	53	-
100만원	16	5	-
기 타	16	5	-
계	295	100	-



[도표14] 특수고용·프리랜서 지원금의 적정금액

2

결론 및 제언

1. 조사결과에 따르면, 코로나19의 대유행(팬데믹)으로 크게 변화된 노동환경은 전남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피해주고 있음

-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세계적으로 제조업 생산력저하, 수출부진 등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, 파급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채찍 효과로,
  - 업종 구별 없이 특수고용, 프리랜서,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취약계층은 노동시간의 단축, 가구 소득 감소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비정규직,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사용 권유, 휴업, 감원 등 잉여인력 정리 우선 대상, 코로나19 방역(예방)도구도 지급치 않는 곳도 31%
  - 정규직군(무기 계약직인 중규직 포함)과 같이 고용이 안정된 경우는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사용에 대해서 코로나19사태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 없음(전체 응답자의 65%). 다만, 코로나19 경제충격과 포스트 코로나기에 나타나게 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, 회사 내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.
  -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(전체응답자의 27%)과 휴가사용[전체응답자의 29%(휴업포함 36%)], 이중 55%가 회사의 권유로 사용함]
  - 코로나19 여파로 일감부족상태에 놓인 기업이나 사업장은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임시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해 노동시간단축, 휴가 등을 먼저 적용하므로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짐.
-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도 14%, 250만 원 미만 76%,
  - 조사결과에 따르면, 전체응답자의 76%가 코로나19사태 이전, 월 평균 임금액이 250만 원 미만으로 전남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 월평균 임금액(3,235천원),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의 월 임금총액

(3,138천원) 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.

- 운수업(택시, 관광버스 등)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객 감소에 더해 2020.1.1.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전남노동권익센터 '이슈페이퍼' 1호 참조 <http://jecec.kr> (자료실 탑재)

○ 임금감소 전체응답자의 44%, 가구 소득의 감소 48%

- 코로나19 사태 이후, 전체응답자의 44%가 임금이 감소(이 중 30~50% 감소 27%, 10~30%감소 17%), 가구 소득 또한 48%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(이 중 30~50%감소가 29%, 10~30%감소 19%).
- 전체응답자 중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 비율이 각각 50%대인 점을 감안할 때, 비정규직군의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보임.

○ 특수고용·프리랜서 직종 종사자에게의 특별지원에 대하여, 전체응답자 (381명중 346명 응답)의 85%가 찬성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특별지원금의 적정액으로 전체응답자의 53%가 50만 원, 31%가 30만 원으로 응답, 전체의 84%가 30만 원~50만 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.
- 기타, 직전 급여의 반액, 자녀수에 비례 등의 의견이 있었음.

2. 코로나19 사태로 전남도내 서비스 생산 감소, 물가상승, 실업률증가

○ 2020년 1분기 서비스업동향조사(통계청 5.7일 발표)결과에 따르면,

- 전남의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0.4%감소, 운수·창고(-11.4%), 예술·스포츠·여가(-8.4), 숙박·음식점(-7.3%), 협회·수리·개인(-7.2%), 교육(-2.2%)등의 생산 감소가 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.
- 증가업종은 금융·보험(8.2%), 보건·사회복지(3.0%)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대출과 소상공인의 사업대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나타냄.

[http://kostat.go.kr/portal/korea/kor\\_nw/1/1/index.board?bmode=read&bSeq=&aSeq=382260&](http://kostat.go.kr/portal/korea/kor_nw/1/1/index.board?bmode=read&bSeq=&aSeq=382260&)

[pageNo=2&rowNum=10&navCount=10&currPg=&searchInfo=&sTarget=title&sTxt=](#)

- 2020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(통계청 5.20일 발표)에 따르면,
  - 전년동분기대비 광공업생산(1.6%)증가, 서비스업생산(-0.4%), 건설수주 감소(-30%, 토목은 -56.8%), 수출(-11.5%) 및 수입 감소세 지속, 소비 판매 상승(3.9%), 소비자 물가 상승(1.3%), 고용률(0.9%p)과 실업률(0.3%p) 상승, 인구이동 순유출(-7,421명)
  - 토목공사 감소율이 -56.8로 두드러져 건설업 관련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등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음.

[http://kostat.go.kr/portal/korea/kor\\_nw/1/1/index.board?bmode=read&bSeq=&aSeq=382541&pageNo=1&rowNum=10&navCount=10&currPg=&searchInfo=&sTarget=title&sTxt=](http://kostat.go.kr/portal/korea/kor_nw/1/1/index.board?bmode=read&bSeq=&aSeq=382541&pageNo=1&rowNum=10&navCount=10&currPg=&searchInfo=&sTarget=title&sTxt=)

### 3. 제언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,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가구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.
  -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책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으로 고안되어야 함.
- 특수고용·프리랜서 업종에 종사, 현행 제도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.
  - 서울, 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특수고용·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(각각 50만 원을 지원하여, 정부지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지원금과 별도로 구성).
- 코로나19 사태 영향은 2020년 1분기 전남 도내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택시, 관광버스 등의 운송, 예술·스포츠·여가(관광업

계 등), 숙박·음식, 교육(학원 등)등의 서비스업종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, 유지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.